

하도급대금 지급보증 발급금액 현실화

국토해양부는 하도급대금 지급을 보증하기 위해 원도급자가 하도급자에게 교부하도록 되어 있는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서에 대한 '발급금액 적용기준'을 공사비의 0.018~0.028%에서 0.037~0.052%로 조정하여 7월 1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편집자 주]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서 발급에 소요되는 비용은 공사규모에 따라 직접공사비의 일정분(0.018~0.028%)을 공사원가에 반영(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토록 하고 있는데 현행 기준('06. 1월 고시)은 보증서 발급기관(공제조합)에서 최고 신용등급(AAA) 건설업체에 대해 적용하고 있는 발급요율(0.28%)을 토대로 산정된 것이어서 공사원가에 반영된 발급금액보다 실제 소요비용이 과다하여 건설업체에 부담이 되어 왔다.

* '07년도 건설공제조합 하도급대금 보증발급 업체 중 신용등급 AAA 미만 업체가 전체 2,017개 중 1,922개로 97% 차지

이번에 개선된 보증서 발급금액 적용기준은 최근 하도급대금 지급 보증서를 발급받은 업체의 신용등급 분포실태 등을 감안하여 BBB단계의 신용등급업체에 적용

되는 발급수수료 요율(0.63)을 토대로 산정된 것이다.

이로써 하도급대금 지급보증 문제로 인한 원도급업자와 하도급업자의 불편이 사라질 것으로 보여진다.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서 발급금액 적용기준

| 공사 규모 | | 당초(%) | 변경(%) |
|----------------------------------|-----------------|-------|-------|
| 50억원 미만* | | 0.018 | 0.050 |
| 50억원~100억원 미만* | | 0.027 | 0.049 |
| 100억원~300억원 미만 | | 0.026 | 0.046 |
| 300억원(추정가격) 이상(최저가낙찰 대상공사) | 건축 | 0.018 | 0.041 |
| | 토목(산업 설비 포함) | 0.028 | 0.037 |
| 턴키(대안)공사 | | | 0.052 |

* 당초 기준 중 공사규모는 34.6억원 미만, 34.6억원~100억원 미만으로 구분

국토해양부는 이번 조치로 425억원 정도의 하도급 대금 지급보증서 발급금액이 공사원가에 추가로 반영 될 수 있게 되어 원도급자의 부담이 감소됨과 아울러 하도급업자에게도 그간 과서 계상된 보증서 발급금액으로 원활하지 못했던 하도급 대금 지급보증서 교부가 적기에 이루어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 원도급자는 발주자로부터 지급받은 하도급대금을 15 일 이내에 하도급자에게 현금으로 지급하여야 하며, 이를 담보하기 위한 하도급대금 지급 보증서를 하도 급계약 체결일 30일 이내에 하도급자에게 교부하여야 함(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 및 시행령 제34조의 3)

공사원가에 반영된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서 발급금 액은 발주자가 사후 정산할 수 있으므로 금번 발급금 액 적용기준 조정으로 인한 과다 지급문제는 없을 것으 로 보인다.

이번에 개정·고시된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서 발급 금액 적용 기준'은 7월 1일부터 입찰공고되는 공사부 터 적용되며, 국토해양부 홈페이지(www.mltm.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하도급 대금 지급보증제도 개요 및 운용 현황

□ 근거

① 하도급대금지급보증 의무 및 발급금액 발주자 부

담 :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 및 하도급거래 공정 화에 관한 법률 제13조의2

- 보증의무 면제 : 하도급 계약금액 4천만원 이하, 원도급자 회사채 신용 평가등급 A이상('08. 2 현 재 26개 업체)

② 도급대금지급보증 발급기준 고시 : 건설산업기본 법 시행령 제34조의 3 제2항

□ 보증금액

하도급 계약금액에서 선급금과 발주자가 하도급대 금을 직접 지불* 할 수 있는 금액을 제외한 금액이다.

* 당사자간 발주자가 직접 지불하기로 합의하거나 원 도급자가 하도급대금 지불을 2회 이상 지체하여 하 도급자에게 직접 지불한 경우 등

□ 하도급 보증 수수료율 적용기준 및 신용등급별 업체 현황

'06. 1 고시한 현행 기준은 AAA 등급업체 적용요율 인 0.28%를 적용하여 적용기준을 산정하였고, 금법 개정 고시된 기준은 BBB 등급업체 적용 요율인 0.63%를 적용, 기준을 산정하였다. ●

▲ 공제조합 등급별 수수료율 및 업체수 현황('08.6 건설공제조합 자료)

| 구 분 | AAA | AA | A | BBB | BB | B | CCC | CC | C | D |
|-------------------------|--------|--------|---------|---------|---------|---------|---------|---------|---------|--------|
| 수수료율(%) | 0.28 | 0.35 | 0.49 | 0.63 | 0.67 | 0.7 | 0.74 | | 0.77 | |
| '07년 하도급 보증기준 업체수(누계비율) | 59 | 88 | 119 | 140 | 171 | 303 | 393 | 296 | 210 | 238 |
| | (2.9%) | (7.3%) | (13.1%) | (20.1%) | (28.6%) | (43.7%) | (63.1%) | (77.8%) | (88.2%) | (100%) |